

#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

(방문요양)



공정거래위원회  
표준약관 제10068호  
(2014. 9. 19. 개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| 계약당사자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이용자<br>(갑)              | 성 명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급<br>(인정번호)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자택)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50%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제공자<br>(을)              | 시설명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종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장 성명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대리인<br>또는<br>보호자<br>(병) | 성 명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 계           | ‘갑’의 (         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자택)<br>이동전화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**제1조(목적)**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**제2조(계약기간)**

- ① 계약기간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일부터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일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3조(급여범위)**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‘갑’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**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**

-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- ② ‘갑’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분          | 이용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용시간<br>(1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월 <input type="checkbox"/> 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토 <input type="checkbox"/> 일 | 오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 ~<br>오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<br>오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<br>오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 |
| 이용시간<br>(2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월 <input type="checkbox"/> 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토 <input type="checkbox"/> 일 | 오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 ~<br>오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<br>오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<br>오후           시           분 |

※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

※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‘을’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- ③ ‘을’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
| 구분   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용시간1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※이용시간2는<br>1일 2회 이용할<br>경우 기재함 |
| 이용시간2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④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⑤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- ⑦ ‘을’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당월( )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.

## 제5조(계약자 의무)

- 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월 이용료 납부
  - 2.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 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 - 4.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 - 2. 급여제공 중 ‘갑’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
  - 3. 급여제공시간에 ‘갑’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 -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 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 - 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 - 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 - 7. 기타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- ③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 - 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 -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‘을’에게 통보
  - 4. ‘갑’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  - 5. 기타 ‘을’의 협조요청 이행

## 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3.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동의 없이 ‘을’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 4. 기타 ‘갑’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‘을’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 2. ‘갑’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 3.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 4. ‘갑’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 6. ‘갑’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

#### 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‘갑’ 과 ‘병’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#### 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‘을’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( )일에 정산하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( )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③ ‘갑’ 은 매월 이용료를 ( )으로 ( )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‘을’ 은 ‘갑’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재계약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‘갑’ 과 ‘을’ 이 필요한 경우

#### 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‘갑’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## 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‘을’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‘갑’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‘을’ 은 즉시 ‘병’ 에게 통보한다.

#### 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‘갑’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‘을’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갑’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**제13조(기록 및 공개)**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(배상책임)

- ① ‘을’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

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
1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 2.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4. ‘갑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#### 제15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‘갑’ (또는 ‘병’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‘갑’과 ‘병’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‘을’ 시설장 (인)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‘갑’ 이용자 (인)

‘병’ 대리인(보호자) (인)

[별 표 1]

I. 공통

1. 월이용료

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월 이용한도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,

(2025년 1월1일 기준)

| 구 분          | 1등급        | 2등급        | 3등급        | 4등급        | 5등급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재가급여<br>월한도액 | 2,306,400원 | 2,083,400원 | 1,485,700원 | 1,370,600원 | 1,177,000원 |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월 이용료<br>(본인분담금) | <p>일반 수급자 : 월 한도액까지는 15 %<br/>                     감경대상자 : 월 한도액까지는 9 %, 6%<br/>                     기초생활수급자 : 0 %</p> <p>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%부담</p>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II. 방문요양

1. 방문요양(방문당) :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

| 구 분       |         | 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방문요양      |         | 가-1               | 가-2       | 가-3       | 가-4        | 가-5        | 가-6        | 가-7        | 가-8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| 30분<br>이상         | 60분<br>이상 | 90분<br>이상 | 120분<br>이상 | 150분<br>이상 | 180분<br>이상 | 210분<br>이상 | 240분<br>이상 |
|           |         | 16,940원           | 24,580원   | 33,120원   | 42,160원    | 49,160원    | 55,350원    | 61,670원    | 68,030원    |
| 본인<br>부담율 | 15<br>% | 2,540원            | 3,680원    | 4,960원    | 6,320원     | 7,370원     | 8,300원     | 9,250원     | 10,200원    |
|           | 9%      | 1,520원            | 2,210원    | 2,980원    | 3,790원     | 4,420원     | 4,980원     | 5,550원     | 6,120원     |
|           | 6%      | 1,010원            | 1,470원    | 1,980원    | 2,530원     | 2,950원     | 3,320원     | 3,700원     | 4,080원     |

가.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"가-8"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.

나.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.

다.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,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##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(생년월일 : )

주 소 :

### 1. 수집대상정보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### 2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이 용 자 : (인)